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절차

<(사협)사람과세상 사회적경제본부 1팀, 20년 3월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절차

1. 점검/준비	2. 총회 전 준비사항	3. 총회 소집 및 개최
- 재무제표 준비 - 조직변경의 세부 유형 결정	- 지분 및 사내유보금 정리 - 사채상환 완료 - 정관(안) 마련/출자금 총액결정 - 설립최소기준 구비 - 관계 행정기관의 인허가	- 총회 소집 결정 및 공고 - 총회 개최 * 정관, 출자금, 그 밖에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결의

4. 총회 의결 후 절차	5. 조직변경 인가 신청	6. 조직변경 후 절차
- 채권자 보호절차 - 조직변경 인가신청 서류 준비 (권역별 지원기관)	- 조직변경 인가 신청 (주무 부처) -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 설립인가증 발급 - 설립 및 해산 등기 -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세부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조직형태 변경가능 주체여부 확인	①「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②「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③「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④ **법인 등**(「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조직변경 총회 전 점검/준비 사항	○ 재무제표 - 순재산액 확정을 위해 재무제표 작성 시기는 조직변경 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정관(안) 마련 -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하며,「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의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포함(※ www.coop.or.kr 자료실 내 표준정관 참고) ○ 출자금 총액 결정 - 출자금 총액은 기존 법인의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순재산액 = 총 자산 - 총 부채 (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로 확인가능) - 출자금 총액은 조직변경 총회에서 확정 의결해야 함

	- (주식회사/협동조합) 기존 법인의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출자좌수 배분 - (비영리 사단법인) 기존 법인의 자산 중 회원의 지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신규 출자를 통해 출자금 결정 및 출자좌수 배분 ○ 사내유보금 정리 -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으로 당기이익금 중에서 세금,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에 축적된 나머지 -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조직변경 총회 결의를 통해 적립금 전환 가능 ※ 비영리사단법인은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므로 당연 적립금으로 전환 ○ 지분 정리 - 협동조합의 설립요건 (① 총 출자비율 30% 초과 불가, ② 자사주 보유 불가, ③ 질권 설정 불가)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분정리가 필요함 - 지분정리는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총회에서 결정하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직변경 총회 공고일까지 완료 ○ 사채 상환 완료 - 사채 : 주식회사가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을 대상으로 회사가 채무자임을 표시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 - 사채는 주식회사만 발행 가능하므로 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사채상환 절차가 필요함 ○ 설립 최소 기준 구비 - **5인 이상의 발기인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구성)** - 변경 전 주식회사의 주주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등을 통해 주주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도록 함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이 가능 - 다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 변경이 가능 ○ 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함 1) 정관 2) 출자금 (변경 전 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 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함)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총회 소집	○ **협동조합의 경우** - 이사회에서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의결하여 이사장이 총회 소집 (기본법 제28조 및 제33조 근거)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 ○ **주식회사의 경우** - 총회일 2주 전 서면으로 회의일, 총회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 발송 - 주주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발송도 가능 - 정관으로 소집통지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단축할 수는 없음

	※ 총회 소집 공고문의 내용(★) ① 총회의 일시 및 장소 ② 총회의 목적사항 - 의결안건 가)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나) 정관 승인 다) 출자금 결정 및 사내유보금 정리 관련 사항 라)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그 밖에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 보고안건 : 그 밖에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중 보고안건 가) 설립최소기준 구비 나) 사채상환완료 다) 지분정리 라) 관계행정기관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
총회 개최	○ 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 - 총회일 현재 구성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기준으로 확정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구성원 전원 참석 및 전원의 동의로 의결 - (서면결의) 법인 형태마다 서면결의 허용여부가 다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민법상 사단법인은 허용하나 협동조합은 불허 - (의결권의 대리행사) 법인 형태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 허용여부가 다름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민법상 사단법인은 허용하나 유한책임회사는 불허 ○ 총회의 결의사항 - 총회의 의결안건 및 보고안건 ○ 조직변경 총회 의사록 작성
총회 의결 후	○ 채권자 보호절차 - 변경 전 법인 등의 채권자에게 총회를 통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 1)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내 법인 등의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30일 이상)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2) 기존 법인 등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30일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함 3)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영리법인 등은 신고 내지 인가 신청 전까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 채권자가 공고 또는 최고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를 제출한 때에는 변경 전 영리법인 등은 해당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음

조직변경 인가 신청	○ 조직변경 인가신청(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 조직변경 신청서류 준비 ① 정관 사본 ②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③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④ 임원명부 및 임원이력서(사진 포함) ⑤ 사업계획서 ⑥ 수입·지출예산서 ⑦ 조합원 명부 ⑧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⑨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⑩ 채권자 이의신청절차 이행(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등)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⑪ 관계 행정기관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 ⑫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⑬ 기존조직의 구성원 확인을 위한 서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합원명부, 회원명부 등) - 조직변경 인가 신청(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주무부처에 인가 신청) - 현장실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권역별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발급
조직변경 후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 등기 : 해산 등기 및 설립 등기 - 조직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총회의 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 조직변경에 관한 중앙부처 인가를 이행하는 것으로 족함 -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경 전 영리법인 등에 대한 해산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청산종결등기 없이 등기기록 폐쇄 ※ 해산등기 기한 :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 설립등기 기한 : 조직변경 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기한 내 미등기시 인가 취소 사유) ○ 사업자등록증 - 협동조합에 관한 신규 등기번호를 부여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신청 - 사업자등록증변경신청서에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 명기 - 업력 인정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지속 사용 ※ 다만, 영리법인(주식회사, 협동조합) →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체계상 동일한 번호 부여는 불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은 불가피함 ※ 사업자등록증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업력의 인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성원 명부 등을 통한 간접 증명)이 필요